

경영 관련 자료(제47조의4제2호 관련)

1. 생산자의 경우

- 가.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·번식 마릿수,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
- 나. 사료의 생산·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사료명, 사료의 종류, 일자별 생산량·구입량·공급량,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자재명, 일자별 사용량, 사용목적, 자재구매 영수증
- 라. 동물용의약품·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·사용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약품명, 일자별 구매·사용량·보관량, 구매영수증
- 마.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: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발급·등록된 처방전
- 바. 퇴비·액비의 발생·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: 기간별 발생량, 처리량, 처리방법
- 사. 축산물의 생산량·출하량,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·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: 일자별 생산량, 일자별·출하처별 출하량, 일자별 도축·가공량, 도축·가공업체명
- 아.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,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2. 취급자의 경우

- 가. 원료·재료로 사용한 축산물의 입고·사용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원료·재료명, 일자별 입고량·사용량·보관량, 공급자 증명서
- 나.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: 자재명, 일자별 사용량, 사용목적,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: 품목명, 일자별 생산량, 일자별·거래처별 판매량
- 라. 인증품의 취급(저장, 포장, 운송 또는 판매) 과정에 대한 자료
- 마.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된 사업장으로서 축산물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(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)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